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29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25.
3. 회 부 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함.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제93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조합의 설립등기 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기재하던 것을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0조(설립등기) ① (생략)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u>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u>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 ⑤ (생략)	제90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2. 출자 1좌의 금액</u> 3.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3조(변경등기) 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u>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과 제2항에</u>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3조(변경등기)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u>제1항</u> ----- -----. ④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조합의 설립등기 시 목적과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시를 통해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변경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다만,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총좌수 및 납입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의 가입·탈퇴나 출자금 추가 납입 등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시마다 등기를 요

구할 경우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과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조합은 해마다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 총액을 변경등기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¹⁾

실제, 조합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가목2)²⁾와 제151조제1항제2호3)에 따라 변경등기 시 출자증가액의 0.4%를 등록면허세로, 해당 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조합이 출자금 변경등기를 위하여 부담한 등기 관련 비용은 연평균 약 33억원에 달함.

[출자금 변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조 합	3,193	3,869	4,688	3,233	1,176	3,500
중앙회	1,826	970	6,372	1,075	1,153	1,176

자료: 농협중앙회

1) 이한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과세완화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제8권제1호, 2019.5.

2)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3)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이에 개정안은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 사항에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출자 1좌의 금액’으로⁴⁾ 개정함으로써 반복적 변경등기로 인한 조합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위와 같이 조합이 부담하는 행정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조합의 한정된 자원을 조합원을 위한 실질적 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임.

또한, 등기부가 법인 관련 정보 취득의 중요 수단이었던 농협법 제정 당시(‘61년)와 달리, 현재는 ‘출자 총좌수와 납입 출자금의 총액’ 등 조합의 자본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가⁵⁾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⁶⁾ 동일한 정보가 등기부와 결산보고서를 통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참고로, 지역농협 정관례에 따르면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임.

5)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6)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송 등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139조(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이에 입법례 중에서도 「신용협동조합법」이나 「새마을금고법」와 같이 출자금 총액이 아닌 ‘출자 1좌의 금액’만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협동조합 출자금 등기 관련 입법례]

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협동조합
등기 사항	출자 1좌의 금액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다만, 등기 제도의 취지가 조합 관련 중요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조합원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거래상 안전을 보장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조합의 결산보고서 공고가 법률이 아닌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공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기 어려워 이해관계자 보호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중앙회의 경우와 같이 재무상태표 공고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⁷⁾ 등기사항 축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보호 저하 가능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제160조(결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안 수용 시에는 관련 규정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제93조 제5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제72조⁸⁾에서 출자감소를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로 규정하고, 제93조 제5항⁹⁾에서는 ‘출자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좌수는 등기 사항이 아니므로 ‘출자좌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청이 불필요함.

따라서 개정안에서 등기 사항을 ‘출자 1좌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5항에서 ‘출자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를 ‘출자 1좌 금액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로 수정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414

8)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9) 제93조(변경등기)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